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 발의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3. 제안이유

-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필요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자녀 양육휴가를 시범적·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주요내용

- 자녀 양육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0항)

5.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제10항 본문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단서에서 부부가 모두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타 시도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3일’ 또는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하거나 ‘만 2세’, ‘만 4세’,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에 대해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연가 일 소진 후’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수반됨.
- 본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

양립 등 미시적·현상적 접근에서 벗어나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과 종합적, 구조적 접근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과 특히 보수적인 사업장 분위기 및 기업문화 등의 이유로 제도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사각지대는 개선해야 할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보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북연구원이 2023년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돌봄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¹⁾되었으며, 각종 연구보고서²⁾에서도 금전지원과 더불어 가족돌봄휴가 등의 지원 정책이 수반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와 같은 근거로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을 살펴볼 때,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가 둘 이하의 경우 연간 7일의 특별휴가를 지급, 셋 이상일 경우에 연간 12일의 휴가 지급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1) 충북연구원이 2023년 11월 발간한 ‘저출생·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도민 심층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돌봄지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가 391명으로 74.6%였고, ‘약간 필요’도 119명(22.7%)에 달하였으며 효과성에서도 307명(58.6%)이 ‘매우 효과’, 187명(35.7%)이 ‘약간 효과’인 것으로 집계됨.

2) 박혜림,『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등.